

감사위원회 규정

2020. 3. 25.



제 1 조 (목 적)

- ① 이 규정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,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소 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5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6 조 (기능 및 권한)

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②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
 - (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
 - (2)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
 - (3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
 - (4)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 - (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감사에 관한 사항
 - (1) 업무·재산 조사
 - (2) 이사의 보고 수령
 - (3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- (4) 외부감사인(이하 “감사인”)의 선임 및 변경·해임·보수에 대한 결정
 - (5)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 - (6) 연간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
 - (7) 내부통제시스템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 - (8)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 - (9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 - (10)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
 - (11)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승인
4. 기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
③ 회사는 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아래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

1. 내부감사부서는 감사 업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내부감사부서 장의 임면 시 회사는 위원회와 사전에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8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9 조 (감사록)

- ① 위원회의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10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08.3.25.)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8.3.)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4.25.)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3.25.)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